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8. 4. 4.

운영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가. 발의일자 : 2008년 3월 25일

나. 발 의 자 : 윤준용 의원 외 4인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3월 28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35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08년 4월 2일)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: 윤 준 용 의원)

가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(2007. 5. 11)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,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 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공단인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업무보고 등으로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“지방자치법 제3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”로 변경(안 제1조)
- “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 내지 제116조”로 변경하고, 제5호 및 제6호 신설(안 제2조)

3.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의 要 旨 (專 門 委 員 김 병 욱)

- 2007. 5. 11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일부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審 査 結 課 : 原 案 可 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8년 3월 25일
발 의 자 : 윤준용 의원 외 4인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(2007. 5. 11)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,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 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공단인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업무보고 등으로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가. 지방자치법 제37조를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로 변경(안 제1조)
- 나.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변경하고 제5호 및 제6호 신설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생략
- 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
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하고, “제37조”를 “제42조”로 한다.

제2조 제3호 중 “제104조 내지 제107조”를 “제113조 내지 116조”로 하고

“제5호”, “제6호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 제5호 :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

제2조 제6호 :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
본부장급 이상 임직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----- 제42조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범위)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<u>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</u>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. (생략) 5. <u>(신설)</u> 6. <u>(신설)</u> 	<p>제2조(범위)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<u>법 제113조 내지 116조의</u>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법 제117조의</u>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6. <u>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</u>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